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등〉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7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등	2

I. 개요

1.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7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4.

(3) 회 부 일 : 2026. 2. 25.

나. 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 하는바,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안 제7조),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며(안 제8조제3항제1호),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통령</u>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대통령</u>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u>보건복지부장관</u> ----- -----.
③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1.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u> 2. 생명과학·의과학(醫科學)·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대통령</u>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3. 종교계·윤리학회·법조계·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u>대통령</u>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자리가 비게 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신 설></u> ⑤ 국가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u>으로 하며, 수석 간사위원은 <u>보건복지부장관</u>으로 한다. ⑥ (생략)	1.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u> 2.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3. ----- ----- ----- ----- <u>보건복지부장관</u>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⑥ -----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u> ----- ----- <u>보건복지부차관</u>으로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국가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¹⁾에서 연 4회 이상(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최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5기 국가위원회는 연평균 2.0회(3년간 총 6회), 제6기 국가위원회는 연평균 1.7회(3년간 총 5회) 개최함.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제5기 및 제6기) >

구분 (기간)	정기회의 개최
제5기 ('18. 6. 12. ~ '21. 6. 11.)	총 6회 (대면 4회, 온라인 1회, 서면 1회)
제6기 ('21. 6. 12. ~ '24. 6. 11.)	총 5회 (대면 2회, 온라인 1회, 서면 2회)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제6기 국가위원회 종료 후 제7기를 구성함에 있어, 제6기 종료 시점(2024. 6. 11.)부터 2026년 3월까지 당연직 위원 외에 법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²⁾,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국가위원회의 소속 및 당연직 위원의 변경,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수행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며 위원회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회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7기 국가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은 2026년 3월에 임명되었으며, 기타 위촉위원은 2026년 4월에 위촉됨.

□ 참고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3호³⁾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위원 위촉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입법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의 임기)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대통령 소속인 위원회가 특정 부처의 소속으로 변경되고 위원의 위촉권자 또한 대통령에서 해당 부처의 장으로 변경될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위원회의 대내외적 위상이 변화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국가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보다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함.
 - 또한, 국가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배아 연구, 유전자 검사, 연명의료제도 및 생명윤리 정책 등 대부분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개정 이후에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통해 차질 없이 기능 수행 가능
- (한국생명윤리학회) 국가위원회가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국가위원회가 세부적인 국가 정책 실무와 보다 밀접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다부처 정책 조정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 위촉위원의 계속 직무 수행 규정은 위원 구성의 의의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률보다는 국가위원회 운영 내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의료윤리학회) 국가위원회의 범정부적 위상과 상징성의 약화 방지, 국가 생명윤리 정책의 거시적 방향 설정이라는 위원회의 역할, 개별 부처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여야 함. 또한, 위촉위원의 계속 직무 수행 규정은 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담보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법률로 규정할 사안 역시 아닌 것으로 보임.

- (한국천주교회) 생명윤리 정책은 특정 부처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며, 국가위원회는 국가의 생명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 (대한간호협회) 정책 효율성과 실무 중심으로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함. 다만, 국가위원회의 위상 약화에 따라 결정사항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상현장의 윤리적 문제를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간호학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493